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22일,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8.) 상정, 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승수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채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채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 설치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방송영상진흥재원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② 대출계정의 수입·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에 따른 대출계정의 주 재원인 방송영상진흥재원(2023년 말 기준, 약 286억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1996~97년도에 종합유선방송국 방송허가 선정 과정에서 방송 및 사회발전 기여계획 등의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조성되었음.

[방송영상진흥자원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9년	총계
○ 지역민방 출연(5개사)	1,000	2,200	-	3,200
○ 2차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출연(24개사)	-	19,750	-	19,750
○ 舊 공익자금 ¹⁾ 출연	-	-	4,500	4,500
계	1,000	21,950	4,500	27,4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진흥자원 출연 이후, 동 재원은 방송영상물 등 프로그램 공급
사에 지원하는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²⁾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정관³⁾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시설구축, 경영지
원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재원을 집행하고 있음.

1) 1980년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조성되어 방송광고 영업대행 수수료(광고비의 20%)를 재원으로 운용되다, 2000년 방송법 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출연받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이 2009년도에 통합하면서 설립되었음.

3)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문화산업" 및 "콘텐츠" 등 다음 각 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5. 방송영상진흥자원

[2023년도 방송영상진흥자원 주요사업 내역]

구 분	방송영상진흥자원 용자지원	용자지원 운영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
사업 목적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 및 케이블 TV업계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을 통한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용자 지원 사업 운영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용자 지원(프로그램 제작자금, 시설구축 자금, 경영지원자금)	- 운영위 개최 등 사업 운영 실비(16백만원) -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 지원(70백만원)	- 방송영상콘텐츠 연구조사(방송콘텐츠산 업포럼, 현안세미나 등)
예산	총 13,295백만원		
	13,015백만원	86백만원	194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3년도 감사원이 실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996~1997년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방송영상진흥자원을 출연받았고, 이러한 재원을 예산 외 별도 재원으로 보유하면서 특정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가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용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보완을 하고 용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⁴⁾

4) 일반적으로 법률 내 계정설치 규정은 ① 특정 기금·특별회계의 한국은행 계정설치 명시, ② 기금 내 용도 구분, ③ 특정 사업을 위해 특정 기관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며, ③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음.

다만, 「방송법」 제92조⁵⁾에 따르면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⁶⁾ 중 방송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송영상진흥재원으로 추진되는 융자사업 중 ‘시설구축’ 자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계정을 설치하게 되면 현행 방송시설 구축 지원 등의 사업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유사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원안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② 대출계정의 수입·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u> <u>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u> <u>② 대출계정의 수입·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